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40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일자 : 2020.11.26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료 납부기한 및 위약금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

2. 수정 주요내용

- 대관료 납부기한을 사용일 5일 전까지로 하되,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 납부를 가능토록 한 단서를 삭제하고(안 제11조제1항),
- 사용일 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의 반환 규정을 삭제하며,
-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(안 제11조제4항제2호),
-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의 반환 규정은 삭제함.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안 제11조제4항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여 “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”으로 한다.

3.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4.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2.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<삭 제>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5일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1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 납부된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.

1.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: 대관료 전액 반환
2. 사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: 대관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